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4329 제안연월일 : 2024. 9. .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1	1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고용보험법	제2200258호	박성훈의원	2024. 6. 10.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치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320호	한정애의원	2024. 6. 11.	전체회의(2024.9.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제2200349호	박해철의원	2024. 6. 11.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
	제2200367호	한정애의원	2024. 6. 12.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제2200376호	이수진의원	2024. 6. 12.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4.9.11.) 상정, 축조심사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제2200565호	한병도의원	2024. 6. 18.	
	제2200583호	김희정의원	2024. 6. 18.	
	제2200691호	김정재의원	2024. 6. 20.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제2200838호	김장겸의원	2024. 6. 24.	(2024.9.12.)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
	제2200926호	한정애의원	2024. 6. 25.	
	제2201073호	서범수의원	2024. 6. 27.	
	제2201242호	홍기원의원	2024. 7. 1.	
	제2201273호	송옥주의원	2024. 7. 2.	
	제2201381호	박 정의원	2024. 7. 4.	
	제2202227호	임이자의원	2024. 7. 25.	

	제2202575호	황정아의원	2024. 8. 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9.11.)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4.9.11.) 상정,축조심사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4.9.12.) 상정,축조심사및 의결
--	-----------	-------	-------------	---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4. 9. 12.)에서 위 1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24. 9. 12.)에서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 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 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휴가를"을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하되, 한"을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기간 중 최초 5일"을 "기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우에"를 "경우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을,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제76 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제4조(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	
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	
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2에 따른 배우자 <u>출산휴가를</u>	<u>출산휴가 또는</u>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	임치료휴가를
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	
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

-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 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 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 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 수(30일을 한도로 <u>하되, 한</u>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 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 <u>기간 중 최초 5일</u>. 다 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u>경</u>우에 한정한다.

<신 설>

1	
	- —
<u>하되, 미</u> -	숙
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	일
<u>을 한도로 하고, 한</u>	
2	
<u>기간</u>	
<u>경우로</u>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 가 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② · ③ (생 략)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

② (생략)

<u>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u>
한정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준용) ①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
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② (현행과 같음)